

사랑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V) 내부 관리계획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제2조(정의)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
4. “정보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사랑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기본방침) 사랑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및 부상 여부 확인, 노인학대 방지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CCTV 운영 및 관리

제5조(책임자 지정)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(이하 “책임자”라 한다.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CCTV 설치·운영 관리책임자

가: 책임자: 대표자

나: 운영(담당)자: 시설의 장. 단 필요시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종사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다: 모니터링(담당)자: 필요시 지정할 수 있다.

2.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단 책임자는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운영(담당)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.

3.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.

제6조(CCTV 설치)

① 사랑요양원 CCTV는 총 22대 설치하며, 설치 장소는 각호와 같다.

1. 침실: 14대(각 침실별 1대)

2. 물리(작업)치료실 1대

3. 식당 1대

4. 프로그램실 1대

5. 주 출입구 방향 복도 1대

6. 침실로 향하는 각 복도에 1대씩 총 4대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주 출입문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.

③ CCTV 운영 장비 중 CCTV 운영 모니터는 프로그램실에 설치하며, 디지털 녹화기의 조작은 대표자 및 시설장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
제7조(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)

사랑요양원의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CCTV 성능: HD급(130만 화소) 이상
2. CCTV 촬영: 24시간 상시 촬영
3. CCTV 정보 보관기간: 60일 이상
4. CCTV 저장: 130만 화소 이상(1,280X960, 초당 10 프레임 이상)
5.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: 프로그램실 및 원장실 내 DVR
6.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: 프로그램실 및 원장실
7.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: 60일 이상 경과시, DVR의 잔여 저장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

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

제8조(CCTV 사용 제한)

-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 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1.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. 단, 침상위치의 이동 등으로 수급자가 보이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 2. 설치목적과 관련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(ZOOM IN),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 3.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

제9조(화상정보 처리 제한)

-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3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

-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4.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써,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6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0조(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)

-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 단 책임자가 직접 이용, 열람하는 경우(제공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는 문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
-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 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(화상장보) 이용·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2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
 3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
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-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-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)

-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(삭제)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(정보통신망 포함)통지해야 한다.
 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- 3.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- 4. 그 밖에 정정·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2조(화상정보 보호 조치)

-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 다만 설치 장소가 불가피하게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출입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, CCTV 화면을 보거나 장비를 만질 수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사랑요양원 책임자 및 운

영담당자로 제한한다.

-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화상정보 보관 관리)
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,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장비관리)

-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,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 결과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 별도의 전산방법을 통해 점검 결과를 기록·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해당 전산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5조(사무의 위탁)

-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·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·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7조(준용규정)

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, 「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, 「행정절차법」 등을 준용한다.